

#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최기찬, 여 명, 전병주,  
최 선, 김 경, 장상기,  
김수규, 김태호, 이은주,  
이승미, 송아량, 김호진  
의원 (12명)

## 1. 제안 이유

현재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현재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.  
(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단서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    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